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패방지교육 내실화〉

■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66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 부패방지교육 내실화	3

I. 제안경위

1.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5. 7. 14.
3. 회부일 : 2025. 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방지교육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부패방지교육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연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만 반드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패방지 교육의 핵심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야 합니다. 부패방지교육 내실화를 위해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외에 정보 접근성이 높은 고위공직자도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교육 대상 및 방법 등의 근거를 대통

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및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교육도 의무화하려 합니다. 이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1조의2).

Ⅲ. 검토의견 : 부패방지교육 내실화

- 개정안은 부패방지교육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고위공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현행	개정안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u>부패방지교육</u>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 <u>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부패방지교육</u> -. 1. <u>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u> 2. <u>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u> 3. <u>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u> ② <u>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고위공직자,</u>

현행	개정안
②・③ (생략) <신설> ④ (생략)	신규 임용자, 또는 승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대면으로 하는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으로 위원장이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대면(非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1조의2는 부패방지교육 실시와 점검만을 규정하고 있고, 부패방지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¹⁾

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는 부패방지교육의 횟수, 시간, 교육 내용·방법 및 부패방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음.²⁾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제3항은 대면교육의 대상자를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로 한정하고 있는데,³⁾ 권익위는 이에 대해 부패방지교육 의무화 도입 단계에서 전면적 대면교육을 실시하기보다는 공직입문 시점에서 청렴 의식을 확고히 정립할 필요가 있는 ‘신규임용자’와 새로운 직책과 권한부여 시점에서 책임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승진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정한다.

- 2)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 ③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자료 또는 교육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3)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광역자치단체장 및 차관급 이상 공직자는 현행 「부패방지 교육 운영지침」 상 고위공직자로 분류되어,⁴⁾ 2시간 이상의 교육 중 1시간 이상을 대면 교육의 방법으로 이수하여야 함.

□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부패방지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율하되, 대면교육의 대상자를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4)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상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공기관 유형별 고위공직자 범위	
기관유형	내 용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지방자치단체	광역 3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기초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지방의회	광역 지방의원, 3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기초 지방의원,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교육청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 유치원 및 학교 장이 교육청 등에서 4급 이상 직위를 부여받아 근무하는 경우 고위직에 포함되나, 7.1.까지만 고위직으로 근무했거나, 학교장이나 유치원장으로만 근무한 경우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공직유관단체	(본사) 다수의 부서(팀, 과, 부, 실 등 명칭 무관)를 총괄하는 직책 ※ 기관장, 부기관장, 상임임원, 본부장급, 상임감사 등 다수의 부서를 총괄하는 직책보다 상위직위(직급)인 고위직도 포함됨 (지사 등 소속기관) 본사 고위직과 동일 직급 이상인 직원 ※ 본사의 고위직 중 가장 낮은 직급이 2급인 경우 지사에서 근무하는 2급 이상의 직원 ※ 본사의 고위직이 임금피크제로 본사내에서 고위직이 아닌 직위로 이동한 경우 교육대상에서 제외, 임금피크제로 소속기관으로 이동한 경우 직급에 변동이 없으므로 고위직에 포함
국공립대학	(교원) 단과대학장급 이상 (직원) 공무원은 3급 이상, 법인 형태의 국공립대학은 공직유관단체 본사 기준 적용
공공의료기관	(의사) 진료과장 이상 ※ 서울대병원 등의 진료과장이 원소속인 서울대의대 등의 겸직교수로 재직중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고위직에서 제외 (직원) 공직유관단체 본사 기준 적용

※ 공무원 직위(직급) 판단 시 직종(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등) 무관하며, 기관장은 모든 공공기관 유형에서 고위공직자에 포함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 외에 ‘고위공직자’까지 추가하려는 것으로,

부패방지교육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함으로서 부패방지교육의 이행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으며, 공공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과 책임성을 가지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직사회 청렴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다만,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⁵⁾과 달리 제2조(정의)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의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며, 제59조제6항에서 수사기관의 고발 대상자로서의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마목·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타.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고위공직자’의 범위만을 규율하고 있는바,⁶⁾

개정안을 입법할 경우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패방지교육의 대상자로서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 부패방지교육 의무화 규정은 2016년 3월 29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의무화 이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은 상승 추세에 있음.

- 전체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16) 85.3% → (17) 90.3% → (18) 91.2% → (19) 93.1% → (20) 93.3% → (21) 95.0% → (22) 95.6% → (23) 96.1% → (24) 96.0%

<최근 5개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공직자	93.3%	95.0%	95.6%	96.1%	96.0%
고위공직자	85.6%	87.3%	92.2%	96.3%	97.1%
신규자·승진자	78.8%	80.8%	87.1%	93.1%	92.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6)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⑥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성급(將星級) 장교
6. 국회의원

- ‘부패방지교육 의무화 규정 도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진행하는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공직사회 부패하다’에 응답한 비율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음을 고려할 때 부패방지교육 의무화도 부패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하다’ 응답률은 2016년 51.5%에서 2024년 35.5%로 하락함.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결과」 공직사회 ‘부패하다’ 인식 현황>

(단위 : %)

‘부패하다’ 응답비율(%)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일반국민	42.4	54.3	69.4	57.8	51.6	52.0	40.9	40.3	33.1	49.8	38.6	38.3	35.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교육의 내실화라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대면교육 의무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10